##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3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임미애·김성환·문금주

박용갑 • 박지원 • 박해철

송재봉 • 이광희 • 이병진

이재강 · 임광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 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 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 운영이나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3조의2(국회의 기능 보장) 계		
	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계엄사		
	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		
	원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제14조(벌칙) ① (생 략)	제1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의 운영이나 국회의원의 활동		
	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u>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u>		
<u>②</u> ~ <u>④</u> (생 략)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